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2007. 4. 26.

시 민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 강화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표창대상 및 표창장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표창대상에 기관 및 외국인 추가 (안 제2조)
- 나. 표창장 수여대상 구체적 명시 (안 제5조)
 -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는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고 이를 표창하기 위해 그 절차, 시기, 부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창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안 제2조), 표창장의 수여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안 제5조) 등으로 요약됩니다.

가. 표창대상에 외국인을 포함 : 안 제2조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의 인위적 장벽이 점차 없어지고 경제, 문화 등 상호 교류 증대와 함께 외국인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 3월 말 현재 종로구 거주 외국인 수는 산업 근로자, 외국동포 및 유학생, 국제 결혼이주 등 총 6,207명에 이르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제고와 생활편익 향상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방면의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고(헌법 제6조제2항), 국가 서훈수여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상훈법 제1조) 표창대상에 외국인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거주 외국인 현황(2007. 3월말 현재)

(단위 : 명)

계	미 국	중 국	대 만	일 본	필리핀	기 타
6,207	546	1,029	271	263	177	3,921

나. 표창장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안 제5조

현행 조례에 의하면 표창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이 중 표창장 수여대상을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는데, 표창장이란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내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데 대하여 이를 칭찬하거나 널리 알리는 의미로 주는 증서이므로 상장이나 감사장과 달리 특별히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수여대상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및 특정요건 하에서는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12조제2항제4호) 이를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IV. 관계법령

○ 상훈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國民이나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 대한 敍勳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공직선거법

第86條 (公務員 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8.4>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法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당해 選舉區 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舉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選舉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舉區民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동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